

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신설 2023. 6. 5.>

국가보훈등록증(제3조제1항 관련)

1.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

(앞면)	
 국가보훈등록증	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
<div>사 진</div> <div>3.5cm×4.5cm</div> <div>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)</div>	(성명)
	(주민등록번호)
	(대상 구분)
	보훈번호:
	(주소)
	(경합 등록사항)
 (발행연월일)	국가보훈부장관 직인
(뒷면)	
 국가보훈부	
▶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	
<div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무료: 「전쟁기념사업회법」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건립·운영하는 전쟁기념관• 감면: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·능원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민속 박물관</div>	<div>QR</div> <div>세부내용 QR 참조</div>
※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	
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	
※ 보훈상담센터 : ☎ 1577-0606	
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 ²]	

2.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

(앞면)



국가보훈등록증

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

사 진

3.5cm×4.5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배경 없이 6개월 내에
촬영한 컬러사진)

(성명)

(주민등록번호)

(대상 구분)

보훈번호:

(주소)

(경합 등록사항)



(발행연월일)

국가보훈부장관

직인

(뒷면)



국가보훈부

- ※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
- 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- ※ 보훈상담센터 : ☎ 1577-0606

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²]

3.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

가.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기재한다.

나.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.

- 1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각 호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2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5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

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다. 앞면과 뒷면에 색변환 잉크, 미세선 문양 등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는다.

라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넣는다.